

<p>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인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p>	<p>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廢止理由는 現行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는 高等學校學群設定에 關한 것으로서 教育法施行令의 改正에 依據 廢止하려는 것입니다.</p>
<p>.....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教育法施行令도 역시 마찬가지로 93年 11月 13日 大統領令 14004號로 改正 公布가된 內容입니다.</p>
<p>○委員長 李喆鎬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p>	<p>그 主要骨子は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에關한 條例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p>	<p>廢止根據는 教育法施行令 第112條第8項第2號에 의한 것입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中學校無試驗入學抽籤方法과學校群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議事棒 3打)</p>	<p>..... (報告)</p>
<p>(參 照)</p>	<p>1. 제안경위</p>
<p>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p>	<p>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서울특별시조례 제658호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2. 제안사유 현행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교군설정에 관한조례는 고등학교 학교 설정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93.11.13, 대통령령 제14004호)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임.</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3. 주요골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교군설정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p>
<p>4.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16分)</p>	<p>4. 근거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2항.</p>
<p>○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5. 검토의견 · 현행조례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974.1.24 조례 제815호로 제정, 그 이후 1989.11.20 제14차의 개정을 거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p>
<p>(議事棒 3打)</p>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中等教育局長 權榮燦 中等教育局長 權榮燦입니다. 서울特別市高等學校學群設定에關한條例廢</p>	